

2022학년도 완산여자고등학교 교복구매계약 특수조건

2022학년도 완산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완산여자고등학교장(이하 “발주처”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 ① 계약물품을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 및 하복을 2022. 4. 20.(수)까지** 납품하여야 합니다.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합니다.)
- ② 교복 구매 부수는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부수로 확정한다.(구매물량은 대략적인 추정물량을 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제2조(원단 및 제조)

- ① 교복 원단은 2021년도에 “발주처”가 현품 설명회 및 사양서에 제시한 원단으로 규격서와 공인기관의 시험성과 재질이 일치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사양서 및 현품설명회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제조한다.

제3조(신체측정)

- ① “발주처”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동복, 하복 2022년 2월 중)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 및 부착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한 규격에 의거 봉제 및 모형, 명찰 부착 등을 통일성 있게 생산, 공급해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_검사검수)

- ① “발주처”는 계약 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 (2차)등 수시로 제작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교복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땀의 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굵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밀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 ⑤ 각 부의 봉합은 잇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 ⑦ 1벌당 여유단추 2개, 짜깁기 천 조각을 포함하여 납품한다.

제7조(납품 및 교환)

-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 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 ④ 교복의 안감, 단추 등에 교복브랜드를 식별할 수 없도록 표시하지 않는다.
- ⑤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발주처”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규격 (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교복(학생복)의 경우 제조년월일, 착용년도를 반드시 제품 라벨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학교주관구매에 따른 학생복의 제조 연월 표시와 관련한 지도·감독 요청

제8조(납품 후 수선)

-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 품질 보증을 해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의 교복 납품 후 “발주처”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계약상대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발주처”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 ④ 교복에 하자가 있을 시 수선을 해주되 구매자가 만족하지 않았을 시에는 새상품으로 교환 해주어야 한다.

제9조(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계약상대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2조(손실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됩니다.

제17조(기타) 계약체결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등**’과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